



도 담 도 담



STOP! 디지털(사이버) 성범죄

디지털(사이버) 성범죄가 무엇인가요?



불법 촬영과 유포, 재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.
보는 것도 범죄를 조장하는 일입니다.

디지털(사이버)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·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,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, 유포협박, 저장,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

디지털(사이버) 성범죄의 유형·적용 법률



유형	적용 법률
촬영물 이용 성범죄	촬영 ▪ 비동의 촬영(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, 5년 이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)
	유포(반포), 제작 ▪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 포함) 반포 등 / 촬영 당시 동의, 사후에 촬영물(복제물)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 등(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, 5년 이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) ▪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(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, 7년 이하 징역) ▪ 아동·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·수입 또는 수출(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1항, 5년 이상 유기징역) ▪ 영리 목적 아동·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판매·대여·배포소지·운반·전시·상영(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2항, 7년 이하 유기징역) ▪ 아동·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배포·대여·배포소지·운반·전시·상영(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3항, 3년 이하 징역 / 2천만원 이하 벌금) ▪ 아동·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(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4항, 2천만원 이하 벌금) ▪ 아동·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알선(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5항,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)
	유통·소비 ▪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 목적 제공(정보통신망법 제42조, 2년 이하 징역 / 1천만원 이하 벌금) ▪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한 부호·문언·화상·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(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, 1년 이하 징역 / 1천만원 이하 벌금)
	유포협박 강요 ▪ 협박(형법 제283조, 3년 이하 징역 / 500만원 이하 벌금, 구류 또는 과태료) ▪ 폭행·협박으로 아동·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 강요(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7조, 7년 이하 유기징역)
	허위영상물 등 유포(반포) ▪ 반포 등 목적 사람의 얼굴·신체·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·음성물(이하 “영상물등”)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·가공(이하 “편집등”) (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, 5년 이하 징역 / 5천만원 이하 벌금) ▪ 편집 등 당시 동의하였으나 사후 편집물 등을 동의 없이 반포”) (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, 5년 이하 징역 / 5천만원 이하 벌금) ▪ 영리 목적 영상물 대상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(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, 7년 이하 징역)
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	▪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(성폭력처벌법 제13조, 2년 이하 징역 / 5백만원 이하 벌금) ▪ 명예훼손(형법 제307조, 2년 이하 징역 / 금고 / 5백만원 이하 벌금), 모욕(형법 제311조, 1년 이하 징역 / 금고 / 2백만원 이하 벌금)



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	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 신청(전화접수: 평일 10:00~17:00) www.women1366.kr/stopds/ ☎ 02-735-8994
민간기관	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(☎ 02-817-7959)
경찰서 등 수사기관	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 신고(☎ 112)
방송통신심의위원회	삭제 요청하는 자료를 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
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	수사기관 사건 접수증, 판결문, 공판기록 등 입증자료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제출

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

수사 지원

- ❖ 여경 전담 조사관제 운영
- ❖ 가명조서 활용 / 진술 녹화
- ❖ 신뢰관계인 동석
- ❖ 국선변호인 선임
- ❖ 진술조력인 지원

심리 지원

- ❖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 지원
- ❖ 성폭력상담소, 여성긴급전화 등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
- ❖ 신변보호 지원
(스마트 워치 지급 / 임시숙소 제공 / 순찰 강화 등)

삭제 지원

- ❖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
(www.women1366.kr/stopds/
☎ 02-735-8994)
- ❖ 방송통신심의위원회(1377)
➡ 삭제 및 재유포 모니터링
- ❖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
➡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

법률·경제적 지원

- ❖ 대한법률구조공단
➡ 법률상담, 소송서류 작성 지원
- ❖ 범죄피해자지원센터
➡ 치료비, 긴급생계비, 학자금 지원
- ❖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
➡ 이전비 등 지원

디지털(사이버) 성범죄 피해자 93.8%가 여성입니다. 22%는 미성년자이고, 60% 이상의 피해자는 여러 제약으로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.

피해자를 탓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고 젠더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키워야 합니다.

